

기간제근로자 (모자보건사업 분야) 채용계약서(안)

강북구보건소장과 기간제근로자 ○○○는 「강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」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.

1. 근로계약기간 : 2016. 2. 11. ~ 2016. 12. 31.

(단, 사업수행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)

2. 근무지 :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 가족건강실

3. 신분 : 기간제근로자(모자보건사업 분야)

4. 업무내용

- 산모 등록 상담 및 관리
- 영유아 예방접종 및 전산관리
- 기타 모자보건사업 지원 등

5. 근무일 : 1일 8시간, 1주 5일, 40시간

가. 근무시간 :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함

6. 임금

가. 임금지급 : 월60,000원(4대 보험료 포함)

나. 임금지급일 : 매월 익월 초 5일 이내 지급

다. 지급방법 : 기간제근로자의 예금통장에 무통장계좌 입금

7. 유급휴일

가. 1주간 소정 근무일수 개근 시 주휴 수당 지급

나.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 부여

8. 재해보험가입

가. 가입보험 : 연금보험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업재해보험

나. 보험료 부담

- 1) 연금보험료 : 강북구보건소장과 기간제근로자는 각각 공단에서 정한 금액을 부담한다.
- 2) 건강보험료 : 직장가입자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에서 강북구보건소장과 기간제근로자가 각각 공단에서 정한 금액을 부담한다.
- 3) 고용보험료 : 월 수령 임금액에서 강북구보건소장과 기간제근로자가 각각 공단에서 정한 금액을 부담한다.
- 4) 산업재해보험료 : 전액 강북구보건소장이 부담한다.

다. 기간제근로자의 부담금은 임금 지급 시 공제한다.

9. 근무실적 평가

가. 기간제근로자는 강북구보건소장이 정한 담당업무 및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계약 만료 시에는 최종 평가한다.

10. 계약의 해지 및 사직

가. 강북구보건장은 기간제근로자에게 9항 가조에 의거 근무실적평가 결과 불량으로 판정될 때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1. (기타채용 조건)

가. 기간제근로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강북구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나. 기간제근로자는 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북구보건소장 해석에 의한다.

12. (해석)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강북구보건소장의 해석에 의한다.

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16년 월 일

고 용 기 관 : 강 북 구 보 건 소 장 (인)

기간제근로자 : 주 소

성 명 (인)